##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명

-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의원입니다.
  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최근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
- 먼저 상위법에서 시·도조례로 위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최소비율을 정했습니다.

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.

○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고려하여
임대주택 최소비율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
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이 가능한
임대주택 비율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.

- 또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조문간 이동을 통해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중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